

일본기술사지 주요 기사 및 목차 번역문

IT법무리스크관리와 기술사의 역할

코나시 요조 기술사(정보공학부문)

(번역정리: 문행규 정보통신기술사 hkmoon123@naver.com)

필자는 본고에서 IT기술자(PM/SE)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으로 민법 등 거래·계약분야 법률,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 노동기준법 등 노무·회사분야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을 예시하고, IT법무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 법무리스크와 관련한 기술사의 역할로 컨설팅업무, 기술감정업무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IT관련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사의 컨설팅업무, 기술감정 업무영역 설정과 IT법무리스크에 대한 보험이나 보증형태의 상품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 들어가면서

IT시스템이 대규모화하고 인터넷의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장애 등에 의한 법적트러블이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술자의 시점에서 IT시스템개발에 있어서 법무상의 리스크(법무리스크)와 그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동향조사를 하였다. 그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자도 법무리스크 관리에 일정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고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기술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한다.

다만, e-커머스나 컨텐츠비즈니스에 있어서 범죄 목적의 위법행위가 다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것들을 제외하고 고찰한다.

2. IT법무리스크의 동향

2.1 정의

법무란 사법 또는 넓게 법률관계의 업무이다. 법무리스크란 법무에 관한 리스크로서 예를 들어 손해배상비용이나 소송비용, 법무대책에 의한 기회손실 등이 포함된다. IT법무리스크란 IT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법무리스크이다.

2.2 IT법무리스크의 사례

(1) 대규모시스템의 사례

2005년 12월, 증권거래시스템에서 주식의 오발주가 있어 어떤 증권회사가 약 400억 엔의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증권회사가 주수와 파는 단가를 역으로 입력하여 그 변경처리에



〈표 1〉 최근의 대규모 IT시스템 장애사례

장해 예	발생년월	사회적 영향
1. 증권거래시스템의 오발주	2005년 12월	증권회사의 손실은 약 400억 엔
2. IP전화 불통	2007년 5월	최대 318만 회선 불통
3. 신문 제작시스템장애	2007년 9월	석간·조간을 축소판으로 발행
4. 자동개찰 다운	2007년 10월	승객 260만 명에 영향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 손실의 책임은 시스템의 개발운영자(벤더), 증권거래처(유저) 중 어느 쪽이 져야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한편, 증권회사는 시스템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권거래처를 고소했다.

〈표 1〉은 최근의 대규모 IT시스템 장애사례이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 복잡, 대규모가 되면 장해의 사회적 영향이 크고 또한 시스템의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그것에 동반해서 책임분담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2) 거래·계약상의 사례

어떠한 규모의 시스템이라도 최근 시스템개발이나 운용을 둘러싸고 유저와 벤더 또는 운용업자 사이에 법적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개발에 있어서 납기가 늦고 커스터마이즈비용의 증가로 유저가 벤더를 민사고소 했지만 벤더가 작성한 사양서 만으로 계약서 없이 개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한 예가 있다.

3. IT법무리스크의 배경

3.1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미국 따라잡기 시대의 종언, 기술의 진보와 다양화로 인해 버블경제봉

괴를 계기로 규제완화의 요구가 활발해졌다.

이 때문에 국제경쟁의 격화와 동시에 해외의 상습관이 여과 없이 들어와 소송에 휘말리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3.2 법화사회에 대해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종래의 행정주도에 의한 사전 규제형 사회에서 사법에 의한 사후재판·구제형사회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사법의 강화로 인한 법화사회-필요 최소한의 규제이외는 자유로 하여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사회-라고 부른다. 법과대학원 신설에 의한 사법시험합격자의 대폭적인 증가는 법화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고 있다.

2006년의 회사법개정으로 인해 규제완화에 의한 기업의 운영형태, 관리의 자유도가 늘어난 반면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3.3 법무부문의 현상

IT관련기업의 법무부문을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IT리스크 중 '개발실패시의 분쟁·소송리스크', '장해발생시의 분쟁·소송리스크', '위탁회사의 개인정보누설리스크', '위탁회사에서의 기밀정보누설리스크' 등의 각 리스크에 대

〈표 2〉 IT기술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거래 · 계약분야	○민법 ○상법 ○금융상품거래법 ○특정상거래법(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지적재산분야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노무 · 회사분야	○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 ○독점금지법 ○회사법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보안분야	○부정액세스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e-문서법)

해서 모두 반수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회답하였다. 실제 법무부문의 IT관련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4. IT법무리스크관리

4.1 IT기술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종래의 법무리스크관리는 기업의 법무부문이나 고문변호사가 담당했지만 기술의 진보가 격심한 지금은 IT시스템의 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자 즉 프로젝트매니저(PM)나 시스템엔지니어(SE)도 상응의 역할을 분담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진다.

IT관련기업·단체가 관계한다고 생각되는 법률의 수는 현재 150개 이상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IT기술자(PM/SE)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은 〈표 2〉와 같다.

4.2 사례에 의한 고찰

(1) 모델거래 · 계약서

IT법무리스크 중 분쟁 · 소송리스크에 대해서는 벤더와 유저 사이의 계약이 중요하다. 계약서는 민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어서 공공의 질서, 미풍양속의 제약 등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문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분쟁 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최근 시스템의 장해발생에 의한 영향이 큰 것에 대응하여 경제산업성에서 '정보시스템 · 모델거래 · 계약서(수탁개발(일부 기획 포함), 보수운용) 〈제1판〉'이라는 보고서가 2007년 4월에 배포되었다.

종래의 모델거래 · 계약서는 벤더의 입장에서 제안된 것이 많지만 이 보고서는 벤더와 유저 쌍방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회의 멤버로 IT관련 분쟁에 관여한 변호사나 변리사가 다수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개발공정에 따른 거래관계는 ①시스템화의 방향성 ②요건 정의 ③시스템 외부설계 ④시스템 내부설계 ⑤시스템 테스트 ⑥운용 시 수발주 형태에 따라 준 위임형이나 청부형 형태의 계약방식이 있다.

이 중 청부형은 계약한 작업의 성과물에 대해서 보수를 얻을 수 있다(민법제632조). 또한 준 위임형은 의뢰한 업무의 인건비로서 보수를 얻을 수 있다(민법제656조, 제643조). IT법무리스크의 경감에는 유저의 협력이 필수로 준위임형계약의 공정에서는 특히 유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복수단계계약방식이라 하며 이는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과 동시에 개발업무의 가시화에 유효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사회적 영향도와 투자액 등 당사자 간의 형편에 의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저작권의 귀속과 양도

IT시스템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그 것을 제작한 벤더에 귀속한다. 하지만 유저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벤더에 귀속하면 노하우 등의 기밀성이 제3자에게 누설될 위험이 있어 벤더로 부터 유저에게 저작권의 양도가 요망되는 것이다. 그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서 양자가 충분히 상의하여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4.3 분쟁의 해결수단

만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우선 당사자 간에 화해교섭을 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등의 ADR(재판외 분쟁해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한다. ADR에서는 조정이나 중재 등이 있어 재판에 비해 신속하게, 비용도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므로 갑자기 재판에 들어가는 것보다 ADR의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4.4 IT법무리스크관리의 요건

사후제재·구제형 사회(법화사회)에서는 기술자의 자율성이 문제되어 자기 책임이 중요해진

다. 이하 IT법무 리스크관리의 요건을 정리한다.

- 벤더, 유저 각각의 역할을 인정한 리스크경감 내지는 분쟁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 기술자에게 법률문은 추상적인 표현이나 독특한 둘려 말하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례를 포함하여 검토한 리스크경감책이 중요하다.
- 기업·단체 내의 법무부문과 IT부문이 협력해서 법무리스크관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교섭상대와는 Win-Win의 관계가 필요하다.
- 프로젝트매니저의 컨프라이언스가 중요하다. 특히 벤더기업에서는 위장청부방지 등의 노동관리와 개인정보유실방지 등의 보안 관리가 필요로 해진다(<표 2>참조).

또한 IT법무리스크관리에는 과제도 있다. 예를 들어, 법무리스크관리의 리스크 파이낸스로서 복수단계계약방식 등으로 정밀·정확하게 된 리스크인식에 대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5 기술사의 역할

5.1 기술사의 주요 역할

<표 3>은 일상업무, 트러블발생, ADR·재판의

<표 3> 법무리스크에 관한 기술사의 역할

	일상업무	트러블발생	ADR/재판
개발당사자의 역할	법무리스크의 경감노력	교섭대응	심리대응
기술사의 역할	컨설팅	컨설팅	기술감정

각 단계에 대한 IT시스템의 개발당사자의 역할과 그것에 대응한 기술사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1) 컨설팅업무

- 시스템개발 벤더대상

IT기술자는 기술지상주의가 되기 쉬우므로 법률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법무리스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이 중요하다.

- 시스템개발 유저대상

IT의 보급에 의한 시스템개발의 경험이나 거래의 경험이 적은 유저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들의 유저에 대해서 IT 지식이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무리스크 관리의 컨설팅이 중요하다.

(2) 기술감정업무

ADR·재판의 단계에서는 사법관계자에 대한 기술감정업무가 있다. 감정은 민사소송법제212조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는 감정을 하는 의무를 갖는다'라는 조문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

기술자가 사법을 서포트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인 입장의 기술사는 충분히 활약의 장이 있다. 기술감정업무에서는 전문기술을 사법관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술감정업무에 대해서는 일본기술사회 프로젝트팀의 과학기술감정센터 등 이미 많

은 기술사가 활약하고 있다.

5.2 컨설팅업무의 내용

이상으로 서술한 기술사컨설팅업무의 일례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가 있다.

- 빈발하는 법률의 신규제정이나 개정을 습득해 두어 그것을 컨설팅에 살린다.
- 판례를 수집하여 법률문과 비추어 분석하여 리스크관리 노하우집을 작성한다. 더해서 PM, SE대상에게 업무상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6. 끝으로

행정의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한편, 법률에 의한 규제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IT에 있어서 기술의 진보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인해 IT분야에서도 법률의 신규 제정·개정이 빈발하고 있어 컨프라이언스, 윤리 또는 BCP(사업계속계획)의 시점에서 보아도 IT법무리스크관리는 중요하다.

또한 IT법무리스크의 확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자의 사기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때문에 IT법무리스크관리는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IT사회의 더한 진전을 위해서는 IT시스템의 품질·안전성 향상에 더해 만일에 대비한 IT법무리스크관리가 필요불가결이라고 할 수 있다.